



유엔 주요 소식

유엔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 기념행사 개최

유엔이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기념하여 인권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는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로슬라브 라이착 유엔 총회 의장, 나비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이 참석하여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축하하였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70년동안 세계인권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으며,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과 존엄의 기준을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정부가 모든 사람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선언하며, 이러한 모든 권리는 보편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성 및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보호 등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인류가 성취한 성과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발전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음을 상기시켰다. 미로슬라브 라이착 유엔 총회 의장 역시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은 유엔 총회뿐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은 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유엔 인권상을 수여하였다. 유엔 인권상은 1966년 유엔 총회 결의안 제2217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68년 처음 수상자를 선정한 이래로, 매 5년마다 인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혹은 개인을 선정하여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유엔 인권상은 14세 이상 여아의 결혼을 허용하던 탄자니아 법의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이끈 탄자니아의 레베카 규미, 극단적 종교주의 근절과 소수인종 권리를 위해 싸운 파키스탄의 인권변호사 아스마 자한기르, 원주민 권리를 위해 노력한 브라질의 조이나 와피사나, 인권옹호가 보호에 앞장선 아일랜드의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에 수여되었다.

시상식에 참여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들은 때때로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여 전 세계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주고 있다고 치하하였다. 그는 또한 이번 인권상 수상자들과 다른 모든 인권옹호자들은 평화를 지속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모두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주요 소식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에 '포괄적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 권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제96차 회기를 폐회하며 알바니아, 온두라스, 이라크, 노르웨이, 카타르, 대한민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대한민국의 17, 18, 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지난 3-4일 진행되었다. 이번 심의에서 위원회는 인종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증오 표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저조한 난민 인정률, 외국인 어린이의 출생등록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 심의 때도 직·간접적 인종차별에 대해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법률의 입법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 변경 횟수 제한과 체류 기간 제한 및 가족 입국 금지, 비자 변경의 어려움 등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또한 제주도에 500여명의 예멘 난민신청자가 도착한 이후,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인종차별과 증오 표현이 확산되고 있음에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제재할 것을 촉구했으며, 난민이 당국의 심사를 받을 때 언어 소통이 가능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이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유엔은 불법 이주자(illegal migrant)라는 단어 자체가 차별적 표현이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자(undocumented migrant)라는 중립적 표현을 쓰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보호, 결혼 이주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 동등한 의료보험 적용 등도 권고에 포함되었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의를 위해 20개 쟁점에 관해 독립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정문자 상임위원이 심의 첫날 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 상임위원은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고 이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제도와 인프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 이행에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로 입국한 500여명의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혐오 현상과 관련하여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특집 (인권메커니즘)

행사달력

이주노동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주노동자협약은 세계 인구의 3%에 해당하는 2억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하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협약은 1990년에 채택되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는데, 다른 인권조약에 비해 오랜 기간이 경과한 2003년 6월 1일에야 발효하였다. 추가적인 비준도 지체되어 2018년 12월 현재 당사국은 54개국에 불과하다. 또한 당사국의 대부분도 노동자를 수출하는 국가이고, 이주노동자 수입국은 거의 비준하지 않았다. 서유럽과 북미국가 중에는 한국가도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 협약의 실효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이 협약은 서문과 9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와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부는 제7조 한 개의 조문만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 협약에서 규정된 권리가 인종이나 종교 등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제3부에서는 합법적인 이주노동자와 불법적인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권에 대해, 제4부에서는 합법적인 이주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부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노동자에게 적용되거나 제외되는 인권의 내용을 다루며, 제6부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건강하고, 형평에 맞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로제공국과 출신국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7부에서는 조약의 이행과 감독에 관하여, 제8부에서는 일반조항이라는 제목으로 협약의 적용이나 효력에 관한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9부에는 협약의 발효, 개정, 유보, 철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19년 1월 UN주요회의 일정

날짜	회의	비고
1/14 - 1/31	아동권리위원회 제80차 회기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황소영 2125-9884

sygraceh86@nhrc.go.kr